

항만법 개정 설명자료



2009. 12

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
남광률 서기관

설명 순서

1 항만법 개정 개요

2 주요 개정 내용

1. 항만법 개정개요

◆ 『항만법』과 『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통합

『항만법』과 『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통합

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법 절차를 집행,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유사 법률 통합

항만법 개정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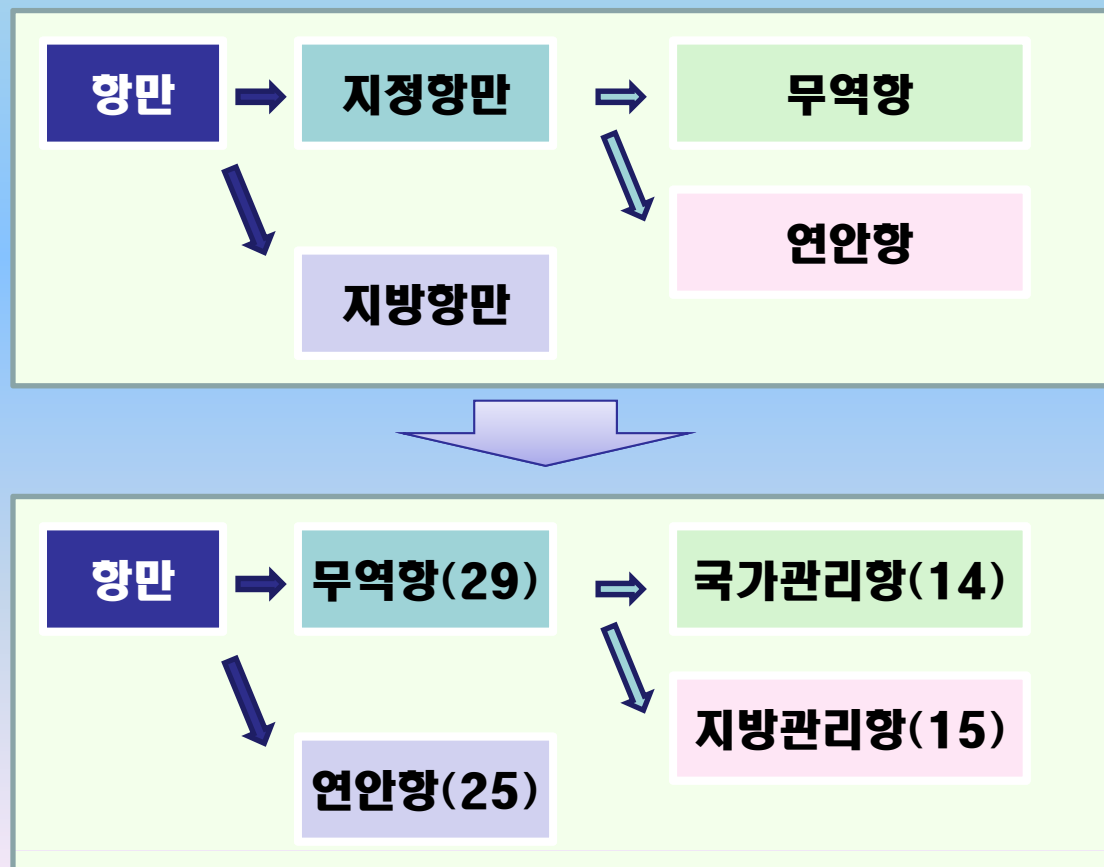
- 항만법 개정안 방심결정 : '08.5. 22
- 항만법 개정안 국회 제출 : '08.11.12
- 항만법 개정안 국회 통과 : '09.4.30
- 항만법 개정 공포 : '09.6.9(시행 '09.12.10)
-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: ' 09.12.14

◆ 항만의 정의 수정

항만의 정의를 기능의 변화에 맞게 조정

“항만”이란 선박의 출입, 사람의 승선·하선, 화물의 하역·보관 및 처리,
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·가공·포장·제조 등 부가가치
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

◆ 항만의 분류 체계의 개편



◆ 항만 시설의 추가

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시설에 포함
-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도 항만에 입지 허용

항만배후단지를 항만시설에 포함

항만공사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를 위한 시설

항만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

의장안벽에 작업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의장부두 도입

◆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관련 사항

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에 항만재개발, 마리나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

분과심의회 운영

- 항만분과심의회, 항만재개발심의회, 마리나분과심의회

◆ 항만기본계획 관련사항

항만기본계획 내용에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 등을 추가

항만구역 밖에도 항만기본계획을 수립

정확한 물동량 수요예측 및 전문기관 육성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

◆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

공고대상사업을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

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시 비귀속대상인 토지까지 포함

토지형태의 항만시설은 토지로 간주, 평가 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취득

◆ 준공 전 사용 제도 간소화

준공 전 시설 사용제도를 신고제로 일원화

- 종전에는 국가귀속시설은 허가제, 비귀속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운영
-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신고제로 일원화 하였음

구비서류의 감축 및 업무처리기간 단축

◆ 예선의 예방력 검사 등

예선이 적정한 예방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방력검사 의무화

예방력 검사 주기 : 선령 25년 미만 5년, 선령 25년 이상 3년

필요시 수시 예방력 검사를 명령할 수 있음

◆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 규정 신설

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에 관한 조항 신설

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과 관리지침의 내용 규정

항만배후단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항만배후단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

◆ 항만재개발사업 절차 개선

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공모의 방법 규정

민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하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 및 절차 간소화

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

- 제안서를 전문연구기관에 검토
- 제3차 제안공고 및 평가방법

◆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에 따른 인가, 허가 등 의제 추가

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법률 추가

-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
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
개정전 의제 법률(항만법 12개, 재개발법 19개) → 개정후(27개)

◆ 항만관리업무의 위임

지방관리항과 무역항의 항만관리 업무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

항만지정, 항만기본계획 수립, 항만요율 결정,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등 정책적 업무는 제외

국가관리항에 대해 지방청장 위임 권한 중 항만시설 지정 고시는 시·도지사 위임 제외

◆ 기타 개정 내용

손괴자 부담금, 임항지역, 임항구역 설정 제도 삭제

항만구역의 변경

- 인천항, 군산항, 장항항, 목포항, 광양항, 통영항, 부산항 항만구역 변경
- 동해항과 묵호항을 동해·묵호항으로 통합



감사합니다.